#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6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1.

발 의 자:김희정・이성권・윤상현

강민국 • 정동만 • 이인선

서일준 · 서지영 · 박수영

정성국 · 김태호 · 김기현

조경태 · 임이자 · 이헌승

나경원 · 엄태영 · 박성민

성일종 · 서범수 · 이양수

조정훈 · 김형동 · 안철수

김석기 • 이종배 • 강대식

의원(27인)

## 제안이유

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지능지수(IQ)가 71~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습·취업·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·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

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·개입, 맞춤형 교육, 자립·고용·직업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 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능동적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"경계선지능인"이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,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 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(안 제2조).
- 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 (안 제8조 및 제9조).
- 라. 경계선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지원계 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).
- 마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, 정보제공 및 홍보, 진단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(안 제18조).

- 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자녀양육, 교육, 자립, 고용·직업훈련, 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제19조부터 제25조까지).
- 사.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사·연구 등을 위하여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(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).
- 아. 시·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,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3조 및 제34조).

##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능동적 주체 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경계선지능인"이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,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경계선지능인의 권리와 책임) ①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  - ②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에게 법률적·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- ③ 경계선지능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견

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.

- ④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·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및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인지능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리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 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고, 국민이 경계선지능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인식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- 제5조(국민의 책무) ①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인격을 존중하고

경계선지능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
- ②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가정의 책임) ① 가정은 경계선지능인이 균형있게 성장·발달하는 데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,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경계선지능인이 자기 발전을 실현하고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이 경계선지능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하여야 하며 건강한 성장·발달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

##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

- 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
  - 2.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

- 3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
- 4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5.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- 6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9조(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한다.
  - ④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3항

- 에 따른 분석 ·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의 협조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·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·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관련 기관·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,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3장 권리의 보장

- 제12조(자기결정권의 보장) ① 경계선지능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결정,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, 타인과의 교류,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  - ② 경계선지능인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경계선지능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경계선지능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수 있다. 이 경우 보호자는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의사소통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경계선지능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 등을 개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와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교사와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담당 직원이 경계선지능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사소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형사·사법 절차상 권리보장) ① 경계선지능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, 제26조에 따른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및 제33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.
  - ② 법원은 경계선지능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경계선지능인, 그 보호자, 검사, 제33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 이 있는 때에는 경계선지능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수사기관이 경계선지능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라야 한다.

#### 제4장 경계선지능인 지원 등

- 제15조(지원신청 등) ①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지원(이하 "지원서비스"라 한다)을 받으려는 경계선지능인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 경계선지능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신청으로 본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경계선 지능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 인별 지원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(이하 "개인별지원계획"이라 한다) 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  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방법·절차 및 제4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16조(개인별지원계획 수립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에 따른 경계선지 능인지원센터(이하 "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"라 한다)의 장에게 개인 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.
  - ②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서비스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서비스의 내용,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③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.
  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인별지 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과 제15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한 경계선지능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⑤ 제4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경계선지능인 또는 그 보호자는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·수정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 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-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·수정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의 절차를 따른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경계선지능인과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연계) ① 경계선지능인지 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계선지능인에게 개인별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(이하 "지원서비스제공기 관"이라 한다)을 연계하여야 한다.
  - ②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·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조기진단 및 개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,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, 진단검사 실시,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미성년자와 그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, 결과에 따라

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26조에 따른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 원, 제33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,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,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의 청소년시설 등 아동과 청소년을 교육·돌봄·보호 등을 위한 기관·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진단 실시 및 개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자녀양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의 내용과 제공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·청소년(이하 "경계선지능학생"이라 한다)의 나이, 수학능력(修學能力),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, 제2항에 따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21조(자립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 1호에 따른 청년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위하여 자산의 형성 및 관리를 지원하거나 경제·법률·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 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 소개, 일자리 창출,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 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

의하여야 한다.

- 제23조(평생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게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, 교육과정의 내용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 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4조(의료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 훈 련, 심리상담 등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(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 선지능인의 보호자가 미성년자인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하 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 등의 내용과 제공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5장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

- 제26조(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 설립 등) ①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·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(이하 "개발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 -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경계선지능인의 성장·발달, 사회 적응, 자립, 복지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·관리, 조사·연구·정책개발
  - 2. 경계선지능인 선별・발굴을 위한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
  - 3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경계선지능인 관련 교육, 홍보, 컨설팅
  - 4. 경계선지능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  - 5. 경계선지능인 직업훈련지원 및 일자리 개발ㆍ지원
  - 6.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및 권리구제 관련 제도개선
  - 7.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 - 8.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
  - 9.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  - 10. 그 밖에 개발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
  - ③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.

- ④ 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제27조(정관) ① 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
  - 1. 목적
  - 2. 명칭
  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 - 4. 사업에 관한 사항
  - 5. 임직원에 관한 사항
  -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 - 7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 - 8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  - 9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- ② 개발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28조(사업계획서의 제출 등) ① 개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개발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

-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제29조(보조금 및 출연 등)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 다.
  - ②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- 제30조(임원) ① 개발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  - ② 이사(원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
  - ③ 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(任免)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- ④ 감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31조(원장) 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고,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  - ② 원장은 개발원을 대표하고 개발원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제32조(「민법」의 준용)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

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- 제33조(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) ① 시·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호 활동,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 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 도에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경 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시·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수 있다.
  - ③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
  - 2.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
  - 3.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
  - 4.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
  - 5.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
  - 6.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
  - 7.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

- 8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례관리
- 9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제1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기능, 경계 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과 소속 직원의 자격·직무 및 배치기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34조(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제35조(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·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(이하 "통합지원체계"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③ 통합지원체계의 업무와 기관·단체의 범위 등 통합지원체계의 운영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 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에 통합지 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, 전담공무원, 전문인력의 배치 등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36조(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)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 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, 교육감 소속으로 시·도경계선 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.
  - ②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시·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 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.
- 제37조(관련 단체의 보호·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 능인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보호·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·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### 제6장 보칙 및 벌칙

- 제38조(비밀유지 의무)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 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9조(지도와 감독)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지 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.
- 제40조(보고와 검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 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제41조(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- ② 이 법에 따른 시·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 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42조(벌칙)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43조(벌칙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서비스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44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45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·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·검사를 거부·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

지부장관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부과・징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